

4.5.11 학생상담센터규정

제정	2013. 08. 06
개정	2018. 10. 23.
개정	2019. 08. 30.
개정	2020. 02. 05.
개정	2020. 02. 28.
개정	2021. 02. 16.
개정	2021. 06. 02.
개정	2022. 06. 09.
개정	2022. 12. 07.
전부개정	2023. 09.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학생의 학교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상담센터는 초당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3조(조직) ① 본 상담센터는 센터장을 두고, 각 부에는 진로상담부, 심리상담부를 둘 수 있다.

② 상담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상담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구성) ① 본 상담센터에는 부센터장과 각 전문 상담(연구)원, 직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전문 상담(연구)원은 상담관련 적격성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③ 조교의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을 따른다.

제5조(업무) ① 본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대학생할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2. 진로탐색 및 진로역량강화를 위한 진로 상담
3. 자아성장, 품성개발,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 및 환류
5. 성격, 인성, 적성 등 각종 심리검사
6. 자살예방 등에 관한 집단교육 및 상담
7. 학생생활 및 상담(적응도, 정신건강, 벤치마킹, 만족도, 관련 문헌 등)에 관한 조사연구
8.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센터 운영계획 수립
9. 마음건강 지원 (고위험군 위기 개입 등)
10. 거리두기 해제 후 일상 회복 지원

11. 대학 내 관련 부서와의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② 본 상담센터는 초당대학교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 등)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2. 북한이탈주민
 3. 다문화가족
 4. 유학생
 5. 기타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장 운영 및 재정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본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학생상담과 지도에 전문능력을 갖춘 전임교원으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상담센터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상담센터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본 상담센터의 사업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상담센터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학생상담과 지도에 전문능력을 갖춘 전임교원 및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성과 및 실적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2. 상담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환류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담센터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평가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다.

제8조(예산 및 결산) 학생상담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예산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이용자 및 이용규칙)① 학생상담센터 이용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초당대학교의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2. 상담센터의 서비스는 재학생을 우선으로 제공된다. 재학생이 상담 진행 중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까지 상담을 계속 할 수 있다.

② 상담은 10~15회기 이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학생이 사례연장 요청서를 제출하고 부서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③ 상담센터는 이용자에게 이용 및 이용제한, 비밀보장 및 예외규정, 그리고 수퍼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동의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이용, 제 3자 정보제공, 교육 및 자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2. 상담동의서
3. 심리검사동의서

제11조(이용제한) 상담센터는 이용자에게 심리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해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상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대상) 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상담센터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업무방해의 경우

1. 집요하고 반복적인 전화 및 학생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학생상담센터 내 고성 및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폭언/욕설/위협 등)
3. 학교 및 부서의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

② 심각한 정신장애 및 위기의 경우

1. 자해(자살) 및 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3. 학교 공동체 및 구성원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우려가 있는 경우(기물파괴 등)
4. 상담원의 전문적 조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상담 윤리

제13조(비밀보장) ① 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상담자는 비밀보장의 예외와 한계 상황이 발생 한 경우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한계) ① 상담자는 내담자 개인 또는 사회에 아래와 같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국가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취득하였을 경우
 3.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 ② 상담자는 전문적 개입을 위하여 아래의 경우 비밀보장의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기관의 기록물이나 동료 등과의 사례회의
 2. 타 전문가와 연계하는 경우
 3.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수퍼비전 등)
 4.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전문가 훈련 등)

제5장 보칙

제15조(시행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본 대학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